

(第12回-文化教育第2次)

이상 간단히 說明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  
 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 特  
 別會計 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 告)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제2회추가경정 예 산(안)	'94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소 계	제2회추가경정 예 산 액	간주처리비	금 액	비 율(%)
1,978,651,985	1,963,133,985	1,961,996,389	1,137,596	15,518,000	0.8

4. 예산내용

가. 세입예산(안)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  
 입규모는 1,978,651,985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0.8%인 15,518,000천원임.
- 국가수입 부담금은 총예산액의 60.9%

《세입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A)		'94기정예산액(B)				비교증감(A-B)		
	예 산 액	구성비 (%)	제1회 추경예산액	간주처리 (국고보조)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가율 (%)	
합 계	1,978,651,985	100	1,961,996,389	1,137,596	1,963,133,985	100	15,518,000	0.8	
국 가 부 담 수 입	계	1,204,881,886	60.9	1,188,226,290	1,137,596	1,189,363,886	60.6	15,518,000	1.3
	지방교육교부금	563,765,036	28.5	548,247,036	-	548,247,036	27.9	15,518,000	2.8
	지방교육양여금	631,278,361	31.9	631,278,361	-	631,278,361	32.2	-	-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	-	1	-	1	-	-	-
국 고 지 원 금	9,838,488	0.5	8,700,892	1,137,596	9,838,488	0.5	-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전입금)	425,195,717	21.5	425,195,717	-	425,195,717	21.7	-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 별회계부담수입	348,574,377	17.6	348,574,377	-	348,574,377	17.7	-	-	
주민부담수입	5	-	5	-	5	-	-	-	

이 예산(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  
 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994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상사유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  
 금이 교부예정 통지되었고,
- '94년도 사업중 년도내에 집행이 완료되  
 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평시이월비로  
 계상하고자 함.

나. 세출예산액

-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978,651,98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0.8%인 15,518,000천원 증액되었음.
- 성질별로는 시설비가 총예산액의 15.8%인 312,653,14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2%증액되었고,

- 소관별로는 교육청 본청예산액이 총예산액의 79.9%인 1,580,627,32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증액되었음.
- 금회에 증액된 예산(안)의 15,518,000천원은 면목공고 신설비로서, 토지매입비 7,620,000천원, 건축비 7,898,000천원으로 계상되었음.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분	추가경정예산액(A)		'94기정예산액(B)				비교증감(A-B)	
	예산액	구성비(%)	제1회추경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계		금액	증가율(%)
					금액	구성비		
합계	1,978,651,985	100	1,961,996,389	1,137,596	1,963,133,985	100	15,518,000	0.8
인건비	1,224,269,625	61.9	1,224,269,625		1,224,269,625	62.4	-	-
학교운영비	124,740,681	6.3	123,914,547	826,134	124,740,681	6.4	-	-
사학지원비	247,640,906	12.5	247,450,444	190,462	247,640,906	12.6	-	-
시설비	312,653,147	15.8	297,135,147		297,135,147	15.1	15,518,000	5.2
교육사업비	45,922,453	2.3	45,801,453	121,000	45,922,453	2.3	-	-
교육행정부	16,224,044	0.8	16,224,044		16,224,044	0.8	-	-
제지출경비	300,152	-	300,152		300,152	-	-	-
예비비기타	6,900,977	0.4	6,900,977		6,900,977	0.4	-	-

- 소관별

(단위 : 천원)

구분	추가경정예산액(A)		'94기정예산액(B)				비교증감(A-B)	
	예산액	구성비(%)	제1회추경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계		금액	증가율(%)
					금액	구성비		
합계	1,978,651,985	100	1,961,996,389	1,137,596	1,963,133,985	100	15,518,000	0.8
교육위원회	1,018,144	0.1	1,018,144	-	1,018,144	0.1	-	-
본청	1,580,627,323	79.9	1,563,971,727	1,137,596	1,565,109,323	79.7	15,518,000	1.0
지역교육청	390,105,541	19.7	390,105,541	-	390,105,541	19.9	-	-
예비비기타	6,900,977	0.3	6,900,977	-	6,900,977	0.3	-	-

다. 명시이월비

-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예산액 83,578,000천원중, 기 지급한 38,050,000천원을 제외하고, 잔액 45,528,000천원을 계상하였음.

- 학교시설비 중·고등학교 시설비에서 예산액 60,658,000천원 중, 기 지출한 15,800,000천원을 제외하고, 잔액 44,85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 기타 시설비 중, 교육지원 기관시설비

(第12回—文化教育第2次)

에서 예산액 22,920,000천원 중, 기  
지출한 22,250,000천원을 제외하고, 잔

액 670,000천원을 계상하였음.

《'94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 유향
서울교원연수원 이전 토지매입	22,750,000	22,250,000	500,000	-면적불부합토지(892㎡)및 지장물(18 건) 이전비
성수공고 신설 토지매입	26,840,000	0	26,840,000	-설립예정지 서울시 「시가화 조성 사업」으로 위치변경 후 추진
대성의집 별관 신축 부지매입	170,000	0	170,000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지연
둔촌공고 신설 토지매입	18,300,000	15,800,000	2,500,000	-미수용 토지(695㎡) 및 지장물(19 건) 이전비
면목공고 신설비	15,518,000	0	15,518,000	-금회추경예산분 • 토지매입비 7,620,000 • 건축비 7,898,000
계	83,578,000	38,050,000	45,528,000	

라.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

-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조항에 의한 '94  
년도 예산총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 '94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액이 1,961,996,389  
천원이었으나, 간주처리 예산액이 4차에

걸쳐 『'94상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 훈  
련비』 『'94직업교육 확충』 등 5개 사  
업에 1,137,596천원이 배정되어, 기정예  
산이 1,963,133,985천원으로 되었음.

《간주처리 예산》

(단위 : 천원)

일 자	재 원		금 액	비 고
	목 적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94. 7.22	'94상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문화체육부	85,000	보 조 금
	'94특별육성종목 지원비	"	36,000	"
'94. 8.12	'94직업교육확충	교 육 부	734,185	"
'94.10.15	공고 2·1체제 운영	"	11,970	"
'94.10.21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학생위탁교육비	"	270,441	"
	계		1,137,596	

5. 예산총칙

- 제1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각각 1,978,651,985  
천원으로 한다.
- 세입·세출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 제6조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소서”와 같다.
- 6.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가. 심사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으로부터 제안되어,</li> <li>• 1994년 10월 26일 제43회 정기회 제2 차 본회의에 상정되고,</li> <li>• 1994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하여 결정된 사항임.</li> </ul> <p>나. 심사결과</p> <p>'94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 특별교부금으로 155억 1,800만원이 교부되어, 세출부문에 면목공업고등학교 신설비중 토지매입비에 76억 2,000만원, 시설비에 78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9,786억 5,198만 5천원임.</p> <p>참석위원 전원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였음.</p> <p>7. 검토의견</p> <p>○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78,651,98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0.8%증액된 15,518,000천원임.</p> <p>○ 편성사유 및 내역을 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내 시되었고, 지정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li> <li>•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518,000천원을 교육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시설확충비를 계상하였음.</li> <li>• 아울러 '94년도 사업중 년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음.</li> </ul> <p>○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li> </ul> <p>○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명</p>	<p>시이월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li> <li>• 연말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처리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li> </ul> <p>.....</p> <p>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案件의 性質上 質疑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審査를 進行하겠습니다.</p> <p>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지요?</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問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質疑와 答辯을 전부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1994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p> <p>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hr/> <p>6. 1995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38分)</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教育廳 關係公務員은 나오셔서 豫算案에 대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가능한 한 要點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p>
---	---